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(이동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-71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. . .

발 의 자 : 이동주, 강희향, 문정애,
백남환, 신종갑, 이필레,
이학래, 이봉수, 유호렬,
전승학, 차재홍, 허정행

1. 제안이유

빈곤, 건강 등 사회·경제적 환경의 영향으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중학교 졸업 수준의 문자해독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성인문해교육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대상 규정(안 제3조)

다.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규정(안 제4조)

라.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공공시설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
3. 관계법령

가. 『교육기본법』 제3조, 제4조, 제8조, 제10조

나. 『평생교육법』 제5조, 제39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입법예고 : 2017. 7.13. ~ 7. 17. (제출된 의견 없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육기본법」 제3조, 제4조, 제8조, 제10조 및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,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성인문해교육”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, 가정·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.
2. “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”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대상)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, 빈곤, 장애,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비문해·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, 성별, 직업 등을 불문한다.

제4조(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) ① 성인문해교육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,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.

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.

제5조(구청장의 임무)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1.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
2. 성인문해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
3.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
4.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

제6조(공동추진)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7조(경비지원)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평생교육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

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

2.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, 홍보, 학술회의, 학습동아리 활동 등

3.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, 문화행사 등

4.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

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8조(공공시설의 이용)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.

제9조(표창 등)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·단체 및 개인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앞쪽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 문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조례 제 5조(구청장의 임무), 제7조(경비지원)

-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2. 비용추계의 전제 : 성인 비문해 학습자 교육기회 제공 및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, 교재비등 지원
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○							
	○							
	소계(a)							
세출	○성인문해교육 시설기관지원 (국고보조금에 따른 대응투자)	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	○성인문해교육 초등기본교육 직접 운영		13,360	13,360	13,360	13,360	13,360	66,800
	소계(b)		23,360	23,360	23,360	23,360	23,360	116,800
□ 총 비용(a-b)			23,360	23,360	23,360	23,360	23,360	116,8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의존 재원	소계							
	시비보조금							
	지방교부세							
자체 수입	소계							
	지방세수입							
	세외수입 등							
지방채								
민간자본								
기타(구비)			23,360	23,360	23,360	23,360	23,360	116,800
합계			23,360	23,360	23,360	23,360	23,360	116,800

5. 덧붙이는 의견 : 성인 비문해 학습자에 대한 수강료 무료 진행(교재 제공)

※ 시설기관 지원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50% 대응투자 필수임

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팀 김은이
연락처	02-3153-8974

관 계 법 령

교육기본법

[시행 2015.1.20.] [법률 제13003호, 2015.1.20., 일부개정]

제3조(학습권)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,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제4조(교육의 기회균등) ① 모든 국민은 성별, 종교, 신념, 인종, 사회적 신분,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의무교육)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.

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제10조(사회교육)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.

② 사회교육의 이수(履修)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.

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·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평생교육법

[시행 2016.3.28.] [법률 제13248호, 2015.3.27., 타법개정]

제5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제39조 (문자해득교육의 실시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·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·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·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